롯데칠성음료

ESG 정책서

롯데칠성음료

목 차

Environment

1. 환경경영정책 2
2. 수자원관리정책 5
3. 녹색구매정책 7
4. 친환경 포장재정책 10
5. 생물다양성 및 산림보호정책 12

Social

1. 인권경영 정책 14
2. 윤리행동 강령 19
3. 다양성·포용성 정책 37
4. 책임있는 주류마케팅 정책 40

Governance

1. 기업지배구조헌장 47
2. 조세관리 정책 53

[환경경영정책]

1. 목적

롯데칠성음료는 건강하고 존경받는 기업 가치 실현을 위해 '환경에 이롭게, 사회에 새롭게, 기업을 건강하게'라는 ESG 슬로건 아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경영정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롯데칠성음료 전 사업장과 임직원, 종속기업, 파트너사,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한다.

3. 환경경영방침

롯데칠성음료는 음료, 주류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을 무대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고객만족을 추구하고 당사의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본 방침은 당사 임직원은 물론 당사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원에게 의사소통되게 하고, 다음 사항을 실천한다.

1. 고객 요구사항, 법적 및 규제 요구사항, ISO 14001 요구사항, 당사가 동의한 그 밖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2.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환경영향을 인식하고, 환경오염 예방과 환경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환경친화기업을 구축한다.
3. 환경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목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며, 적절성 및 유효성을 확인한다.

본 방침은 정기적인 경영 검토를 통해 당사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 평가 되며 대표이사에 의해 개정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내외에 홍보한다.

4. 환경경영방침 이행 방안

1.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1) 롯데칠성음료는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발맞추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체계를 운영하고 환경 이슈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경목표 및 실천과제를 수립한다.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2040년까지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여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3) 이행 수단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다양한 신기술에 대하여 연구 개발 및 투자를 반영하도록 한다. 탄소중립 및 RE100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경영시스템

1) 롯데칠성음료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토양오염, 생물다양성보전 등에 관하여 규제 당국의 환경 법규를 준수하고 ISO14001기반으로 롯데칠성음료의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업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품의 개발, 생산,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경영활동에 있어 환경경영방침 범주 내 환경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 및 환경관리 활동을 적절하게 운영관리하여 지속적으로 환경성과를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변경사유(법률 제·개정, 최고경영자 경영방침, 환경오염방지시시설 변경,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변경 등)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영관리 기준을 변경하여 관리한다.

3) 신규 프로젝트, 변경된 활동 및 제품 구매 등이 발생할 경우 회사표준에 따라 규정된 환경 법규 및 기타 요건을 파악하여 환경측면파악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3. 환경목표 및 C-Level KPI 수립

1) 롯데칠성음료는 ESG KPI를 설정하고 이행, 추진한다.

2) 환경인증, 환경관리, 친환경 기술 도입, 공급망 관리 등 환경경영과 관련한 유관부서는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등 환경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5. 관련 회사 표준

환경경영정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회사표준으로 제정된 내부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1. 통합경영시스템[1] 매뉴얼
2. 통합경영시스템 운영규정
3. 식품안전/환경목표 및 추진계획 관리지침
4. 통합경영시스템 내부심사규정
5. 통합경영시스템 내부심사지침
6. 환경운영관리규정
7. 환경운영관리지침

[1] 통합경영시스템 : 당사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을 통합경영시스템으로 운영함

8. 수자원관리지침
9. 대기오염물질 관리지침
10. 수질오염물질 관리지침
11. 폐기물관리지침
12. 유해화학물질관리지침
13. 소음진동관리지침
14. 온실가스관리지침
15. 환경측면파악 및 평가지침
16. 환경준수평가지침
17. 환경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지침
18. 환경리스크관리지침
19.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및 표시 지침

6. 제정·개정

1. 최초 제정일 : 2023.10.18

[수자원관리정책]

1. 목적

롯데칠성음료는 경영활동으로 사용하는 수자원을 환경경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수자원이 재사용·재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롯데칠성음료 전 사업장과 임직원, 종속기업, 파트너사,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한다.

3. 수자원관리 방침

롯데칠성음료는 음료, 주류 제품 생산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수자원 다소비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취수, 소비, 처리에 대하여 감축 노력을 이행한다. 기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1. 경영활동 전반의 수자원에 대한 환경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수자원 이용을 감축하고, 이용된 수자원은 가능한 재사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개발한다.
2. 수자원 리스크가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리스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수자원 리스크 발생 시 고객의 안전과 수자원 이용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 롯데칠성음료는 자연 자원 활용, 기술 적용 등을 통하여 대체 수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확대하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수자원 공급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대체 수자원 종류: 빗물 활용, 해수담수화, 하수 재이용, 물 수요관리 등)
4.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파트너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자원 사용 감축을 독려하고 효율적인 수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동 이행 노력한다.

4. 수자원관리정책 이행 방안

1. 수자원관리 목표 수립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1) 롯데칠성음료는 경영활동 전반의 수자원 활용에 대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자원 사용 절감 목표 및 실천과제를 수립한다.
   2) 롯데칠성음료에서 이용, 발생하는 수자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자원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폐수의 오염도를 낮추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한다.

2. 수자원관리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체계 마련

1) 롯데칠성음료는 사업장 별 물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수자원 위험도를 관리하도록 한다.

2) 생산 계획에 따른 수자원 가용량, 발생 가능한 물리적, 규제적, 환경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여 수자원 관련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대체 수자원 활용 방안에 대하여 롯데칠성음료에 적용 가능한 기술이 있는 경우 검토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5. 관련 회사 표준

수자원관리정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회사표준으로 제정된 내부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1. 환경운영관리규정
2. 환경운영관리지침
3. 수자원관리지침
4. 수질오염물질 관리지침
5. 환경측면파악 및 평가지침
6. 환경준수평가지침
7. 환경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지침
8. 환경리스크관리지침

6. 제정·개정

1. 최초 제정일 : 2023.10.18

[녹색구매정책]

1. 목적

롯데칠성음료는 당사 사용 제품 및 원료에 대하여 녹색제품 인증을 취득한 제품 구매 확대를 통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롯데칠성음료 전 사업장과 임직원, 종속기업, 파트너사,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한다.

3. 녹색제품 구매 기준

롯데칠성음료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으로 규정한다.

1. 녹색제품 구분

    1) 환경표지제품: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2)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3) 우수재활용제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 및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2. 녹색제품 인증제도

구분	환경표지 인증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 인증
표시			
운영목적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인증 (KS 품질 이상 만족)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
대상품목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의 제품군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	폐지, 폐고무, 폐플라스틱, 폐목재 등 11개 분야
인증기준	환경표지 홈페이지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	GR제품정보시스템
인증기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4. 녹색구매정책 이행 방안

1.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원칙

1.1 녹색구매 적극 권장

1) 모든 구매 절차에 녹색 제품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2) 주요 원·부자재뿐만 아니라 비품 및 소모성 자재를 구매할 때에도 녹색구매를 고려한다.

1.2 녹색구매 적극 권장 예외 조건

1) 녹색제품에 현저한 품질 저하가 있을 경우

2) 녹색제품의 공급이 불안정하여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3) 녹색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4) 상황에 따라 녹색제품 외의 특정 제품 구매가 필요한 경우

2.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방안

2.1 녹색구매 시스템 구축

1) 효과적인 녹색구매 실천 및 활동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2) 녹색제품 발굴 및 도입, 구매 실적 평가 및 중장기 목표 수립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3) 구축된 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유한다.

2.2 파트너사 관리

1) 파트너사의 녹색제품 보유 현황 및 추가 계획을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2)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실효성있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신규 인증을 독려한다.

2.3 전사적 관리

1) 녹색구매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고 회사 내에서 관련 창구를 개설한다.

2) 녹색구매를 위해 유관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협조를 요청한다.

5. 관련 회사 표준

녹색구매정책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따르도록 한다.

6. 제정·개정

1. 최초 제정일 : 2023.10.18

[친환경 포장재정책]

1. 목적

롯데칠성음료는 발생되는 포장재 폐기물에 대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사용 확대를 목표로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롯데칠성음료 전 사업장과 임직원, 종속기업, 파트너사,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한다.

3. 자원순환 경영방침

최근 자원 순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의 친환경 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당사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고 자원 순환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이행한다.

1. 당사는 지속해서 포장재 경량화 및 신기술 적용에 대한 연구 및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하여 폐기물의 원천 발생량을 저감하고 탄소배출량을 낮춘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당사는 무라벨 제품 확대 및 지속가능한 신규 포장재 적용을 통하여 당사 제품의 재활용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재활용 플라스틱(Recycled PET; r-PET 등) 도입 및 확대를 통하여 플라스틱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지속가능한 플라스틱(ex. 친환경 원료 적용 등)의 연구 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제품에 적용한다.
4.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약에 적극 참여한다.

4. 친환경 포장재 정책 이행 방안

1. 플라스틱 배출량 감축
    1) 롯데칠성음료는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Virgin 플라스틱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PET병 경량화 및 무라벨 제품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2) 재활용 용이성 개선을 위하여 자사 제품에 에코탭 및 에코절취선 적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향후 주류 제품군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유색 PET병을 무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한다.
2. 재생 소재 플라스틱 사용 확대

1) 롯데칠성음료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재활용 플라스틱(Recycled PET; r-PET 등) 제품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PET 제품에 재생원료 비율을 지속해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2) 자원순환 경제 구축을 위하여 r-PET 원료 확보 및 기술 비용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제품의 품질 검증을 통해 적용토록 한다.

3. 재활용 용이성 개선

1) 자원순환 경제 구축을 위하여 제품의 재활용 등급을 우수 등급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2) 신규 친환경 포장재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4. Re:Green 자원순환 프로세스 구축

1) 롯데칠성음료는 제품의 설계, 생산 단계에서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뿐 아니라 소비, 배출 단계에서까지 폐기물을 올바로 분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생산 → 유통 → 소비 → 수거 → 재사용'으로 플라스틱 순환생태계를 구축한다.

2) 롯데칠성음료에 의해 발생되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PET 회수시스템을 구축 및 확대하여 소비자와 기업이 협력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재생원료 사용 및 r-PET 제품 구성비를 확대하여 제품 및 패키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며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업사이클링을 통하여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유니폼, 에코백 등의 상품을 제작, 활용 및 기부하도록 하며, 소비자 참여 캠페인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원순환 프로세스 구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한다.

5. 관련 회사 표준

친환경 포장재정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회사표준으로 제정된 내부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1.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평가 및 표시 지침

6. 제·개정

1. 최초 제정일 : 2023.10.18

[생물다양성 및 산림보호정책]

1. 목적

롯데칠성음료는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산림훼손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경영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롯데칠성음료 전 사업장과 임직원, 종속기업, 파트너사,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한다.

3. 생물다양성 및 산림보호 방침

인간의 자연 자원 활용에 따른 동식물 서식지 및 산림 훼손,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에 따라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생물다양성 및 산림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롯데칠성음료의 경영활동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1. 생물다양성의 정의에 따른 지구상의 생물종(Species) 다양성,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Ecosystem) 다양성, 생물이 지닌 유전자(Gene) 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이용 전략을 마련하도록 한다.
2. 경영활동 전반에 생물다양성 및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생물다양성 위험 초래, 산림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대응책을 마련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를 실시한다.
3. 경영활동에 따라 영향을 받는 자연 자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관련 정책과 보전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자원, 자본 투자를 추진하도록 한다.
4. 자연 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자체, 지역주민, 파트너사 등의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생물다양성 및 산림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전파하도록 한다.

4. 생물다양성 및 산림보호정책 이행 방안

1. 롯데칠성음료는 생물다양성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ISO14001 표준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경영 활동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 평가하여 환경영향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 롯데칠성음료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에 대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를 최대한 낮추고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환경, 산림, 해양 분야의 소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생물다양성 및 산림보호 활동 및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4. 산림 보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녹지조성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구분	1차	2차	3차	4차
명칭	처음처럼숲 1호	처음처럼숲 2호	처음처럼숲 3호	별내리는숲
조성년도	2018년	2018년	2019년	2019년
면적	20,000m³	3,300m³	20,000m³	1,300m³

[롯데칠성음료 녹지조성 사업]

5. 관련 회사 표준

생물다양성 및 산림보호정책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근거하여 따르도록 한다.

6. 제·개정

1. 최초 제정일 : 2023.10.18

[인권경영 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롯데칠성음료가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 UN글로벌콤팩트, 세계인권선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 인권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며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노동 원칙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롯데칠성음료 전 사업장과 임직원, 종속기업, 파트너사,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한다.

3. 롯데칠성음료 인권경영헌장

우리는 고객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인권경영"을 지향하고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인류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경영활동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올바른 행동 및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이 "롯데칠성음료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합니다. 우리는 본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영을 함에 있어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인권경영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UN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원칙과 규범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경영 활동 전반에 구현되고, 조직 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권경영체계를 비롯한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합니다.

하나,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고객, 유관기관 및 파트너사,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임직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종, 성별, 학력, 연령, 장애, 종교,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존중 및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지향합니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과 국제 기준으로 정해진 근로 최저 연령을 준수합니다.

하나, 우리는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령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최저 임금을 보장합니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합니다.

하나, 우리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피해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하나, 우리는 파트너사와 동등한 관계로서 상생발전을 추구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합니다.

하나, 우리는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법 또는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생산된 원자재, 상품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 우리는 경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탄소중립, 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하나, 우리는 경영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며,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제공합니다.

이상과 같이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4. 실행 방안

1. 인권경영 거버넌스
   인권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과 방향 설정 및 인권경영 이행 모니터링은 이사회 산하의 전문위원회인 ESG위원회가 수행한다. ESG팀은 ESG위원회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인권교육, 정보공개, 인권 실사, 피해자 구제 등을 수행한다.

2. 인권영향평가

   2.1 핵심 고려요소
   임직원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방지·완화하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절차는 인권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영향 식별 및 평가, 발견한 문제점 대응, 대응 활동에 관한 기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포함한다. 인권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한다.

   1) 회사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인권 관련 부정적 영향을 포함시킨다.

   2) 사업장의 소재와 규모, 인권 관련 위험성, 사업의 특성과 내용, 현지국의 정치·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련사항을 고려한다.

   3) 회사의 활동과 사업운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인권에 미치는 위험도 점차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실행한다.

   2.2 실시방법
   국내외 사업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질적·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점검하는 노력을 다음의 프로세스에 따라 실시한다.

1) 국내외 주요 사업장에서 인권관련 리스크를 대비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인권영향평가를 통하여 현상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2) 평가는 내부 전문가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3) 경우에 따라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 및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면담을 실시한다.

4) 경우에 따라 실질·잠재적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잠재적 영향에 대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관련절차를 수행하여 방지·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이미 발생한 실질적 영향은 구제 및 해결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

5) 평가는 인권경영 관련 핵심요소를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실시한다.

2.3 대응 및 후속조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의 방지, 완화를 위한 인권영향평가로부터 발견한 사실을 기반으로 대응체계를 확립하여 후속조치를 취한다.

1) 내부 대응체계확립

I. 발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관부서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II. 내부 의사결정, 예산 할당, 감시 절차를 이러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한다.

III.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도출한 문제점을 유관 부서에 정확히 이해시키고 중요사안으로 관리하여 대응한다.

2) 후속 조치 및 구제

I.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이의 방지,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필요 조치를 취한다.

II. 최선의 정책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도 예견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체와 협력하여 부정적 영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III. 직접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정적 영향이 다른 주체와의 관계에서 기업의 운영 및 생산, 서비스와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직접적 책임은 없으나 소정의 역할을 담당한다.

IV. 회사가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주체와 협력하여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V. 효과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한다.

2.4 이해관계자 의사소통

이해관계자들이 인권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경우 책임감을 갖고 소통한다.

1) 영향을 받는 집단, 개인과 투자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책임성과 투명성에 입각하여 의사소통하며, 이해관계자들이 용이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면회의, 공식보고서 발행, 온라인 채널 활용 등 다양한 의사소통 형태를 고려한다.

2) 공식보고서 발행 시에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포함하며, 보고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 검증절차를 고려한다.

3)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인권영향과 관련하여 회사가 대응을 적절히 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2.5 내재화 및 제도 개선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조직문화 내재화, 제도개선 활동 등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실질적 개선을 유도한다.

1) 전 임직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육, 인권경영 관련규범에 관한 교육, 성공 및 실패사례 공유 등 인권경영을 조직문화로 내재화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2) 전문가의 자문,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제도 실행을 통한 개선점 발굴 등으로 지속적으로 인권경영 제도 개선을 수행한다.

3. 고충처리제도

3.1 핵심 고려 요소

제기된 문제가 신속히 논의되고 구제될 수 있도록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

3.2 고충상담부서(ESG팀 조직문화개선담당), 익명제보메일(Hotline), 롯데칠성 신문고 등 다양한 접근 수단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신고자, 피해자 및 협조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조사 신청 및 이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3.3 고충처리제도는 회사의 인권존중 책임과 관련해 다음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이들은 인권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ESG팀 조직문화개선담당에 직접방문, 우편,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고,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2) 고충 수렴 및 피해자 구제를 조기에 직접 다루어 인권 피해의 확산을 막는다.

3)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인권정책 및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다.

5. 관련 회사 표준

인권경영 및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회사표준으로 제정된 내부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1. 인사관리규정
2. 상벌규정
3. 취업규칙_음료
4. 취업규칙_주류
5. ESG위원회규정
6.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지침

6. 제·개정

1. 최초 제정일 : 2023.10.18

[윤리행동 강령]

1. 목적

롯데칠성음료는 그룹 차원의 최상위 윤리규범인 '롯데인의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윤리 행동준칙을 마련하였다. 윤리강령 및 임직원 윤리규범을 통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올바른 가치 판단 및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일체의 금전적 이익을 요구 또는 수령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업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임직원, 협력업체, 대리인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실천적인 윤리경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롯데칠성음료 전 사업장과 임직원, 종속기업, 파트너사,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원한다.

3. 롯데칠성음료 행동강령

1. 고객과의 신뢰

1.1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1) 원칙

우리는 경쟁사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추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고객이 사용하는 제품, 서비스의 품질과 완성도는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롯데라면 믿고 쓸 수 있다는 신뢰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2) 실천 사항

①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가장 먼저 선택받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한다.

② 경쟁사가 절대 모방할 수 없는 가격 대비 최고의 만족을 매 순간 추구한다.

③ 롯데라는 브랜드만으로 고객이 믿고 쓸 수 있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 위생 및 품질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절차를 매 순간 철저하게 준수한다.

④ 빠르게 변환하고 있는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객의 합리적인 불만,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

⑤ 단기적인 이익 추구 또는 제품의 하자를 숨기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이다. 특히 제품의 위생이나 안전성 또는 품질과 관련된 문제는 바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조치한다.

⑥ 파트너사가 납품하는 제품이나 부품이 회사의 규격 및 안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지 항상 확인한다. 사소한 부품 하나가 제품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준 미달이나 결함이 있는 부품 또는 재료는 엄격하게 제외한다.

⑦ 제품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 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추후 발생 가능한 안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더 엄격한 사내의 규격 및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른다.

1.2 정직한 마케팅

1) 원칙

우리는 올바른 고객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정직하고 솔직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단기적 매출 상승이나 이익을 위하여 고객에게 허위 혹은 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우리 동료들이 최선을 다해 쌓아온 고객과의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명심한다. 고객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2) 실천 사항

① 제품 및 서비스의 마케팅이나 고객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직원은 관련된 법령 및 회사의 규정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② 홍보물을 제작할 때,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한다.

③ 외부에서 제작한 마케팅 자료를 사용할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지,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철저히 확인한다.

④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쟁사 제품을 무분별하게 비난하고 왜곡된 정보를 사용하는 마케팅은 삼가한다. 경쟁사 제품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⑤ 마케팅 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애매하거나 과장된 표현을 삼가고, 의미가 명확한 단어들을 사용한다.

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마케팅 관련 자료에 제품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부서에 알린다.

1.3 고객 정보 보호

1) 원칙

기업의 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감당하지만, 고객 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는 우리를 믿고 있는 고객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 정보를 회사의 기밀사항 이상의 기준으로 취급하고 관리한다. 우리는 고객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기준 이상으로 내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2) 실천 사항

① 고객 정보 보호의 원칙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에 적용된다. 해당 정보를 최우선 보호 대상으로 취급한다.

② 고객의 개인 정보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③ 무분별하게 고객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다. 법령상 허용된 개인 정보 이외에는 어떠한 개인 정보도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④ 개인 정보는 반드시 고객이 동의한 업무에 한정하여 이용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어졌거나 불필요해진 고객의 개인 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복구할 수 없는 수준으로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⑤ 국가마다 개인 정보에 대한 규제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나라의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한다.

⑥ 개인 정보 유출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복사기 위, 책상, 혹은 이면지 박스 등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⑦ 파트너사로부터 고객 정보를 받는 경우에도 우리의 정보와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한다.

⑧ 파트너사에 고객 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그 회사가 고객 정보를 보호할 만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정보 사용 후의 완전한 폐기 여부까지 점검해야 한다.

1.4 브랜드 보호

1) 원칙

우리는 우리가 곧 롯데의 얼굴이라는 생각으로 TV,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터넷 웹사이트 등의 미디어를 통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발언을 하기에 앞서 회사의 입장과 고객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회사의 로고, 사명, 상표, 브랜드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않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실천 사항

① 임직원 각자의 행동이 회사의 이미지와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언행에 주의하며 품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② 회사와 관련된 모든 기밀 정보(재무 정보, 영업 정보, 고객 정보, 파트너 정보, 직원 정보, 지식재산 등) 및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정책, 사건, 루머 등을 언급하거나 회사와 관련된 사진, 영상, 음성이 담긴 파일 등을 무단으로 미디어에 게재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③ 미디어를 통해 회사 및 이해관계자를 비방하지 않으며 회사 및 이해관계자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긴 사건, 불만, 험담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

④ 회사, 이해관계자 또는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불법·편법 행위 조장, 음란물 배포, 개인적 모욕, 욕설, 성차별 등을 하지 않는다.

⑤ 미디어와 인터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홍보담당자 등 관련 부서와 인터뷰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다.

⑥ 회사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언급할 경우 반드시 회사의 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임을 밝혀야 한다.

2. 임직원과의 신뢰

2.1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

1) 원칙

우리 롯데인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누구나 능력과 노력만큼 성장할 수 있는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우리는 외압이나 청탁에 의해 입사하거나 승진한 사람들이 아니며, 외압이나 청탁 없이 운영되는 깨끗한 조직 문화를 후배들에게 물려 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업무의 특성, 역량과 성과 등 공정한 요인만 인사에 반영한다. 모든 인사 관련 결정은 성별, 연령, 인종, 국적이나 출신지역, 세대, 종교, 장애 등의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차별을 배제한다. 이를 통해 롯데 임직원 모두가 회사의 의사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2) 실천 사항

①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특정인을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를 만든다.

② 성별, 연령, 인종, 국적이나 출신지역, 세대, 종교, 장애 등 개인이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고유한 특성과 관련된 차별을 조직에서 추방한다. 채용, 승진, 배치, 급여, 보상, 복리후생 및 교육 등에서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③ 국가마다 근무조건에 관한 법령이나 정책이 다를 수 있다. 그로 인해 현지 법인의 인사 규정이나 정책이 그룹의 방침과 차이가 생긴다면, 그 규정과 정책은 반드시 명문화하고 그룹의 방침과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④ 특정한 성별, 연령, 배경을 지닌 사람만이 해당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해야 한다.

⑤ 인사청탁은 우리 공동체에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위해가 되므로 거부한다.

⑥ 오직 역량과 성과만으로 평가하고, 채용이나 승진을 청탁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2 구성원 간 상호 존중

1) 원칙

롯데의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중과 존엄을 저해하는 어떠한 언행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료나 우리 공동체의 품위와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체의 말이나 행동을 지양함은 물론이고, 위협적, 모욕적, 적대적이거나 불쾌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다.

2) 실천 사항

① 동료들을 언제나 내 가족처럼 존중하고 배려한다.

② 본인만의 가치관으로 타인을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는 문화를 만든다.

③ 부서원이 있어야 부서장이 존재할 수 있다. 부서원은 소중하게 육성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관리자에게 맡긴 인재이므로 최선을 다하여 지원한다.

④ 근무 시간 외의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다. 관리자는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지양하고 부서원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상대에게 폭력 및 가학성을 보이거나, 거부감을 주거나, 위화감을 주는 말과 행동을 피해야 한다. 자신이 생각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⑥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전화, 메신저, SNS, 이메일 등 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을 게시 및 전송하는 행위를 조직 내에서 근절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환경을 만든다.

⑦ 위 원칙은 우리 롯데 임직원뿐만 아니라 고객, 파트너사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항상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2.3 양성평등

1) 원칙

'롯데인'이라는 단어 안에는 동등하게 존중 받고 대우받을 자격과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롯데는 남녀 간의 성별로 인해 차별하지 않으며, 성과 관련하여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언행은 엄격하게 금지한다.

2) 실천사항

① 출산과 육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동료들의 출산 및 육아휴직을 환영하고 축하해야 한다. 출산, 육아와 관련된 어떠한 인사적 차별이나 불편함을 단호히 배격한다.

② 직원을 성별로 구분하는 표현인 '여직원'은 롯데인에게는 불필요한 단어이다. 또한 여성 인재는 배려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구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③ 성과 관련하여 불쾌감을 주는 언행, 성희롱,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나 접근은 물론이고 교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하기에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④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사내 성희롱 사건처리 담당자에게 신고한다.

⑤ 성희롱 행위를 한 자는 직급의 고하 및 행위의 의도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되고,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의사에 반한 전환 배치 등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에도 처벌된다.

⑥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용하여서도 안되고, 사건 처리 및 징계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⑦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2.4 안전한 근무환경

1) 원칙

우리는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모든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함은 물론이고 더 엄격한 회사 내부 규정을 만들고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우리는 롯데 임직원뿐만 아니라 파트너사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많은 사고가 경험 부족이 아닌 익숙한 일상에 숨어있는 '설마'와 '방심'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롯데인은 익숙한 일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2) 실천 사항

① 안전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시고, 비용, 납기, 관행 등을 이유로 안전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미루거나 개선을 주저하여서는 안된다.

② 위험한 작업 조건 및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사소한 것이라도 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와 바로 상의하여 개선해야 한다.

③ 본인이 근무하는 곳의 안전 관련 규정과 대책을 숙지하고, 작업장 내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 방법, 안전수칙 및 응급 상황 시 대응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④ 모든 사업장에서는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의 유형을 분석하고 사고 별 초기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직원, 시설, IT 자산 등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의 안전을 위해 치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⑤ 임직원은 허가 받지 않은 사람이 회사 사업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파트너사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안전과 위생의 중요성을 알리고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⑥ 본인 또는 동료가 건강 문제, 심리적 불안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힘든 상태인 경우에는 관리자와 상의한다.

⑦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행위, 불법 약물을 제조, 사용, 판매, 소지하거나, 복용한 상태로 근무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⑧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은폐하지 말고,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해야 한다.

2.5 자산 보호

1) 원칙

우리는 회사의 자산을 최선을 다하여 보호하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한다. 우리는 건물, 토지, 통신설비, 자금, 시스템, 홍보 목적의 티켓, 차량 등의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 근무 시간, 특허, 상표, 문서 저작물 등의 무형자산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2) 실천 사항

① 개인의 근무 시간도 회사의 자산이므로 근무 시간 중 사적인 통화, 개인적인 이메일, SNS, 웹서핑 등을 자제한다. 상식적인 수준을 넘는 사적인 통화나 이메일은 공동체의 자산을 남용하는 행위이다.

② 부동산, 데이터 인프라, 장비 및 소모품을 포함한 롯데의 자산은 오용, 파손, 도난 또는 부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③ 회사 자산의 고의적인 파손, 횡령, 절도는 고용 계약 해지 및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인가받지 않은 정보의 이전, 유출은 물론 비용과 관련된 허위 보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④ 회사의 전자 장비를 이용한 주식 거래, 도박, 음란물 다운로드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⑤ 다른 임직원에게 회사의 공적인 업무 외의 금융 업무, 선물 구매, 정보 조사 등 개인적인 일을 지시 또는 부탁하여서는 안된다. 당신의 지시로 인한 직원의 업무 시간 낭비 역시 회사 자산의 남용이다.

⑥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초대권, 사은권 또는 경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⑦ 우리 자산이 중요한 만큼 파트너사와 경쟁사의 자산도 중요하다. 파트너사와 경쟁사의 자산도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⑧ 회사 자산의 외부 이용이나 정해진 목적 이외의 사용 시 반드시 관리자와 상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지식재산권 보호

1) 원칙

우리는 회사의 지식재산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호한다. 우리는 회사 내부의 지식재산과 각종 정보를 사전 허가나 적법한 절차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의 범위에는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은 물론, 외부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회사의 영업 비밀과 기술적 비밀 등이 포함된다.

2) 실천 사항

① 업무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회사의 지식재산이다. 정확하게 기록 및 보고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회사의 어떤 정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지식재산에 해당되는지 숙지하고, 관련된 사내 지식재산 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③ 특히 외부인과 접촉 시 지식재산 보호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무단 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 근거하여 징계조치 또는 형사처벌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다.

⑤ 임직원이 업무 중에 생산한 노하우나 기술은 개인의 것이 아닌 회사의 재산이다. 개인이 생산한 지식재산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⑥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령이 국가 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회사의 지식재산이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⑦ 파트너사와 협력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충분하게 협의하고 분명하게 규정한다.

⑧ 파트너사 및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지식재산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항상 확인해야 한다.

⑨ 경쟁사, 파트너사 등으로부터 인력 채용 또는 경쟁사, 파트너사로 인력 이동 시 타인 또는 회사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는지 입퇴사 절차를 검증하고 관리한다.

2.7 정보유출 방지

1) 원칙

우리는 전자통신장비를 업무상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며, 정보보호에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정보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실천 사항

① 회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자장비들은 업무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다. 업무 외의 용도로 예외적으로 사용할 경우 허용되는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보보호를 위하여 전자장비를 통한 통신과 서비스를 임직원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다.

③ 개인 컴퓨터의 바이러스 감염, 방화벽 실행, 보안 소프트웨어의 최신 업데이트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 내에서는 인가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해야 한다. 모든 자료의 업로드나 다운로드는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⑤ 비밀번호를 3개월에 한 번 이상 변경하고, 타인과 비밀번호 공유를 지양한다.

⑥ 퇴사 또는 이직 시 개인적인 하드디스크나 전자장비에 있는 회사 업무 관련 데이터들을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직원의 퇴사나 이직 시 데이터의 무단 유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한다.

⑦ 회사 내에서 회사의 보안시스템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허가되지 않은 이동식 저장매체나 이메일을 통한 회사 문서와 정보의 외부 반출은 금지되므로, 꼭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이메일 등으로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항상 수신인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기밀유지가 필요한 내용은 비밀번호를 설정한 문서로 전달한다.

⑨ 회사 내부 임직원, 고객, 파트너사 등과의 미팅 등 오프라인에서도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⑩ 개인 SNS 활동이 회사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통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3. 파트너와의 신뢰

3.1 공정거래 법령 준수

1) 원칙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해당 지역의 공정거래 법령을 선도적으로 준수한다. 공평과 공정, 그리고 공개의 원칙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온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우리는 이를 전 세계의 모든 파트너사와의 관계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는다. 우리는 기존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상생의 문화를 지향한다.

2) 실천 사항

① 지위를 남용하여 파트너사에 불공정한 거래나 관행을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공정거래 법령을 숙지하고 이에 위반되는 부당한 행위를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

② 파트너사는 품질, 가격, 재무 건전성 등 객관적인 기준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선정한다.

③ 롯데의 청렴성, 윤리성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과 노력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업체가 파트너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④ 임직원의 친인척이나 지인이 있는 파트너사나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정보 유출, 청탁 또는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리자와 상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이나 정책이 다를 수 있고, 공정거래 법령의 내용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 바뀌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고 숙지하여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3.2 파트너 존중

1) 원칙

우리는 모든 파트너사와의 협력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우리가 지키는 모든 행동강령의 원칙은 파트너사와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2) 실천 사항

① 파트너사 임직원들을 롯데의 임직원과 똑같이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② 파트너사의 경영방침을 존중하고, 파트너사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존중한다.

③ 파트너사에게 롯데의 행동강령 및 기타 정책과 관련된 조항을 설명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동의할 것을 요청한다.

④ 파트너사의 규모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한다.

⑤ 파트너사의 기밀정보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

⑥ 파트너사에게 인적자원 개발,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들의 경쟁력 향상이 우리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3.3 공정한 경쟁

1) 원칙

우리는 국민 경제의 올바른 발전을 위하여 회사의 독창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한다. 우리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

2) 실천 사항

① 경쟁하는 회사들이 서로 합의나 묵인을 통해 고객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기업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 당장 눈앞의 이익이나 성과를 위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경쟁업체와 가격, 입찰내용, 비용, 수익, 시장 점유율, 영업 지역, 제품군 배분, 영업조건, 유통방식, 지역 또는 시장 할당, 특정 공급자 또는 고객에 대한 거부 행위(보이콧),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고객 또는 공급업체 등급 등 공정거래 법령에 저촉될 수 있는 내용은 협의조차 하여서는 안된다.

③ 토론 의제가 명확하지 않은 경쟁사와의 회의에는 참석하여서는 안된다. 토론 의제가 명확한 회의에 참석했더라도 위험한 주제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토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다.

④ 특정 국가에서 허용되는 행동이 다른 국가에서는 불법일 수도 있고, 특정 국가에서의 경쟁업체가 다른 국가에서 파트너사가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한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각 나라별 경쟁 관련 법령을 숙지한다.

⑤ 회사가 단독으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쟁사와 합작투자나 협력을 할 경우, 사전에 법률위반 가능성을 검토한 후 실행한다.

⑥ 위법 행위는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의 명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법 행위 자체는 물론이고 위법 행위를 사주, 묵인, 방조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3.4 합법적인 정보수집

1) 원칙

우리는 경쟁업체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고 확보한다. 우리는 거래상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파트너사가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파트너사와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실천 사항

①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하거나 고객, 파트너사를 통하여 경쟁사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파트너사와의 계약서에는 '비밀유지조항'을 포함하고 지켜야 한다.

② 특히 경쟁사와의 직접적인 정보 수집·교환 등은 공정거래 법령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법경영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③ 경쟁사 근무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였을 때, 경쟁사의 기밀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을 통하여 경쟁사의 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안된다.

④ 익명의 제보로 경쟁사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정보 열람 및 처리 시 준법경영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⑤ 수급 사업자 등 파트너사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한 것으로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파트너사에게 기술과 관련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3.5 부패 및 부정청탁 금지

1) 원칙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한다. 거래 관계에서 부당하게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부적절한 금품, 향응을 받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우리가 일하는 모든 국가에서 적용되며, 우리는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 등을 비롯하여 회사의 사업 수행 지역에서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국내외 부패방지법령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2) 실천 사항

① 회사의 임직원은 공직자 등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회사의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공직자에게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는 현금 외에도 선물·식사·접대·향응·편의 제공·취업 제공·기부·후원 등 일체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포함된다.

④ 이해관계자가 금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고 회사의 관련 규정과 롯데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⑤ 선물, 식사 및 접대에 관한 회사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규정 이상의 선물은 반송하여야 한다. 반송이 어려운 경우 준법경영 또는 윤리경영담당자와 상의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⑥ 파트너사 등 우리와 함께 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우리의 일과 관련해 허용되지 않는 금품 등을 수수해도 우리의 잘못으로 비춰질 수 있다. 부패방지법령 위반 사실은 계약 파기 사유임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리의 규정을 설명하고, 준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⑦ 국가별로 선물, 식사 및 접대에 관한 규정이나 관습이 다를 수 있다. 출장이나 현지 근무 시 관련 규정이나 관습에 대하여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준수한다.

⑧ 국내 법령 및 본 행동강령 위배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외국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때 현지 법령이나 관습이 본 행동강령 또는 회사의 규정과 다를 경우 미리 회사 준법경영담당자의 조언 및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한다.

4. 주주와의 신뢰

4.1 주주 가치 제고

1) 원칙

우리는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주를 대신해 회사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끊임없이 개선하여, 주주 가치가 장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모든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2) 실천 사항

① 효율적, 합리적 의사결정과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

② 내부회계관리 규정, 시스템을 정비하고 독립적인 감독이 가능하도록 감사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한다.

④ 모든 주주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며 소수 주주의 권리도 적극 보장한다.

⑤ 누구보다 롯데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롯데의 주주이다. 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한다.

4.2 이해 상충 방지

1) 원칙

우리는 개인과 회사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 회사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동한다. 우리는 개인적인 이익으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이해 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회사에 공개하고 승인을 받는다.

2) 실천 사항

①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챙기는 등 회사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임직원의 가족, 친구 또는 지인, 대리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② 자기거래, 회사의 사업기회 이용 등 회사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회사의 승인 없이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되거나 지분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

④ 임직원의 이해가 회사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거나 이해 상충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사전에 준법경영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4.3 회계 투명성 제고

1) 원칙

우리는 회사의 실적 및 재무 상태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련 법령, 회계 기준 및 내부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한다. 모든 회계 기록은 적절한 회계 정보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정확한 경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실적, 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그것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한다. 어떠한 데이터도 왜곡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정확한 회계 기록은 단순히 회계 및 재무 담당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의무이다.

2) 실천 사항

① 공인된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제 회계 및 국가별 회계 기준은 각기 다를 뿐 아니라, 수시로 개정되고 있다. 항상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③ 관련 데이터는 적정한 회계 기간 내에 기록해야 한다. 단기 실적을 과장하거나 일시적으로 질책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익이나 비용의 기록을 지연시키거나 앞당겨서는 안된다.

④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일정한 회계 정보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비용과 관련된 시간 및 경비를 상세히 기록하여 보고서로 제출한다.

⑤ 상사의 지시에 따라 담당자가 회계 문서를 조작하였을 경우, 상사와 담당자 모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르게 된다. 상사가 문서 조작 등을 지시할 경우 담당자는 바로 준법경영담당자와 상의해야 한다.

⑥ 거래 상대방이 회계 문서 조작 등의 혐의가 있거나 거래 관행이 투명하지 않은 개인, 기업 또는 국가로 의심될 경우 관리자와 문제점을 상의하고 해당 거래를 재고하여야 한다.

⑦ 관리자는 바르고 투명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점검하고, 회계 문서의 조작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4.4 내부자 거래 금지

1) 원칙

우리는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가족 또는 지인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효율적, 합리적 의사결정과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주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실천 사항

① 업무와 관련한 모든 정보의 보호에 항상 유의한다. 특히 그 정보가 내부자 정보라면, 개인적인 이용은 물론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이는 또한 누구보다 롯데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해할 수도 있다.

② 내부자 정보에는 경영실적 관련 데이터, 경영진 인사이동, 구조조정, 합병, 인수, 신제품 개발, 신규 특허 취득, 대규모 투자 관련 정보, 특정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 등이 포함된다. 본인이 취급하는 정보가 내부자 정보인지가 모호하다면 일단 내부자 정보에 준하여 관리한다.

③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 주식교환 등 일체의 거래, 담보권 설정·취득, 유가증권 대차거래는 엄격히 금지된다.

④ 타인의 매매 기타 거래를 예상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 기타 거래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⑤ 퇴사나 이직 후에도 재직 시에 알게 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는 금지된다.

⑥ 파트너사 및 경쟁사의 내부자 정보를 알게 될 경우, 이 역시 우리의 내부자 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한다.

⑦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는 파트너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가족 및 친인척의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⑧ 파트너사의 주식을 입사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업무상 부당한 편의 제공 등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준법경영담당자와 상의한다.

⑨ 회사 및 계열사의 주식에 대한 헷지(Hedge) 거래, 공매도, 그와 관련된 옵션, 스왑 등의 파생상품 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5. 사회와의 신뢰

5.1 환경 보호

1) 원칙

우리는 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업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업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하고, 환경 보호를 위하여 작은 행동부터 실천한다. 국내뿐 아니라 진출한 모든 국가에서도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각 나라의 환경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것 이상의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엄격히 준수한다.

2) 실천 사항

① 자연 자원을 필요한 만큼 효율적으로 쓰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법적 요구 수준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② 새로운 제품의 개발 또는 공정 과정의 변경 시에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③ 우리의 활동이 환경과 관련된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부 규정을 수립하고,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④ 우리 업무의 변화나 혁신을 통한 환경 보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활동과 노력을 격려한다.

⑤ 파트너사 및 이해관계자 역시 우리와 같은 수준의 환경 보호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우리와의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

⑥ 해외 근무 시 현지의 환경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한다.

5.2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사회공헌

1) 원칙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함은 물론이고 우리가 가진 역량과 자원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사회봉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며, 기업 차원에서의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을 통한 사회공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실천 사항

① 롯데인에게는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임직원 각자는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② 지역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③ 학문과 예술, 문화, 체육 등 인류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공익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④ 회사를 대표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사회봉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은 롯데인의 의무이자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⑤ 우리의 사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

5.3 인권 존중

1) 원칙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이자 자유이다. 롯데인은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국제적으로 선포된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지침>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인권을 보장한다.

2) 실천 사항

① 우리는 업무와 관련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권을 존중한다.

② 우리는 인권 존중에 관한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지키고, 이를 파트너사에 전파한다.

③ 우리는 우리의 사업으로 인해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우리는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지지한다.

⑤ 우리는 현지의 노동관련 법령을 숙지하며 준수한다.

⑥ 회사 및 파트너사의 사업장에서 아동 노동을 용납하지 않으며, 어디서든 최소 연령에 대한 현지 법령과 국제 기준을 준수한다.

⑦ 18세 미만인 직원의 고용이 필요한 경우 준법경영담당자와 상의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연령 요구 사항을 확인한다.

⑧ 강요, 구속 또는 그 밖의 강제 노동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5.4 문화적 다양성 존중

1) 원칙

우리는 글로벌 롯데라는 명성에 맞게 각 나라의 가치관과 관습을 최대한 인정하고, 전 세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와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한다. 우리는 진출한 국가의 자원과 인력을 빌려서 쓰는 것이므로 소중하게 보호하고 발전시킬 의무가 있다.

2) 실천 사항

①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현지 임직원들을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② 어디에서나 열린 소통은 매우 중요하다. 현지인들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채널을 만든다.

③ 현지인들에게 우리의 가치와 관습을 따르도록 강요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먼저 배운다.

④ 국가와 지역마다 다른 법령, 관습, 예법 등이 존재합니다. 국내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행동이 해외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외 근무 또는 출장 시 이러한 점을 유의한다.

⑤ '신뢰'의 원칙은 전 세계 어디서나 적용된다. 항상 현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우리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서 그들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5.5 각국의 법령 준수

1) 원칙

롯데인은 전 세계의 법령을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용되는 관련 법령과 사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며, 일상 업무 수행 시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우리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부패 또는 범죄활동에 가담하는 행위를 엄격히 배척한다.

2) 실천 사항

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숙지하고,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② 회사의 해외 사업장에 파견된 경우 해당 국가는 물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의 관련 법령을 숙지한다.

③ 원자재나 제품의 수출입 업무 시 각국 정부의 인허가나 승인 등 반드시 각 나라의 수출입거래법령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준수한다.

④ 무역 제재 조치 국가나 단체 및 개인과는 거래를 금지한다.

⑤ 국제 무역 협상 또는 거래, 외국 정부·단체와 거래 시 사전에 준법경영담당자와 상의한다.

⑥ 불필요하게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여 현금화 하는 등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그룹 신문고 또는 각 회사 신문고 등 담당 부서에게 알린다.

5.6 정치와 경제의 분리

1) 원칙

정치는 국가의 모든 구성원이 1인 1표 원칙에 기반하여 의견을 모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공정한 과정에 기업이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직원들이 정치에 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치단체가 우리의 사업에 유리한 견해나 주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룹, 회사 및 조직 차원에서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2) 실천 사항

① 롯데의 이름은 정치적 활동에 사용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② 회사의 자원이나 비용을 이용하여 특정 정치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하거나 지원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개인적으로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파의 모임에 참석할 경우 회사의 직위나 직책이 노출되어 회사차원에서 그들을 지지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한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직위나 직책이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여야 한다.

④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의 홍보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⑤ 대중매체를 통해 글이나 댓글을 작성할 때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항상 주의한다.

4. 관련 회사 표준

롯데칠성음료 윤리경영 및 준칙에 대한 모든 사항은 회사표준으로 제정된 내부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1. 인사관리규정
2. 상벌규정
3. 취업규칙_음료
4. 취업규칙_주류
5. 임직원 윤리규정
6. ESG위원회규정
7.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지침

5. 제·개정

1. 최초 제정일 : 2023.10.18

[다양성·포용성 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롯데칠성음료 전 임직원에 대한 다양성·포용성을 개선하고, 직장 내 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을 방지하여 임직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롯데칠성음료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전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과 롯데칠성음료와 거래하는 협력사 및 그 임직원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3. 롯데그룹 다양성 헌장

롯데 임직원 모두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능력에 따라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지향하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아래와 같이 다짐한다.

1. 남녀 간 다양성을 존중한다.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 내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출산과 육아를 포함한 여성친화적 제도 시행에 앞장선다.

2.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국적과 인종을 초월하여 글로벌사업을 주도할 다양한 인재 등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데 앞장서며, 이들이 조직 내에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열린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3. 신체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선천적, 후천적 장애로 인한 신체적 차이를 포용하고, 그들이 고유한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근무 여건을 제공하며, 기업과 사회에 기여한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4. 세대 간 다양성을 존중한다.
   구성원이 직급과 연령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 구현에 노력한다.

4. 기본 원칙

1. 다양성 및 포용성
   다양성은 문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사회적 경제적 지위, 능력 등 임직원의 특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포용성은 모든 임직원이 조직에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과 포용성은 조직 구성원이

불합리하게 차별 받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차이를 존중하여 포용적인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2) 모든 임직원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 경험, 지식을 활용하여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3) 임직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개방적인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5) 임직원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킹 그룹을 마련한다.

6) 특정 임직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를 이유로 그들을 회사에서 소외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7) 다양한 세대가 각기 다른 능력을 제공하면서 공존하고, 다양한 배경, 국적, 인종의 임직원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곳임을 인식한다.

8) 결혼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등 가족관계가 서로 다른 모든 임직원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9) 임직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능력에 기반한 승진 제도를 도입한다.

10) 임직원 채용, 관리,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되는 경우 특정 그룹 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형평성은 임직원이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 채용, 교육 등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준수한다.

1)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회사, 계열사, 공급·협력업체 내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3)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여성 임직원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직장 내 개인의 성장이 성별을 이유로 방해 받지 않도록 한다.

5) 가치가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6) 임직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7)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학력에 따른 편견 없이 타인을 대우한다.

3.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의 행위는 금지된다.

1) 신체적 괴롭힘

2) 정신적 괴롭힘

3) 업무적 괴롭힘

4) 개인적 괴롭힘

4. 성희롱 금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5. 실행 방안

1. 다양성·포용성을 개선하고 직장 내 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2.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상담, 조사 및 처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둔다.
3. 누구든지 이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전담 조직에 직접방문, 이메일 등의 신고 체계를 갖춘다.
4. 전담 조직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사건을 처리한다.
5.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가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6. 관련 회사 표준

다양성·포용성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회사표준으로 제정된 내부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1. 인사관리규정
2. 상벌규정
3. 취업규칙_음료
4. 취업규칙_주류
5. ESG위원회규정
6.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지침

7. 제·개정

1. 최초 제정일 : 2023.10.18

[책임있는 주류마케팅 정책]

롯데칠성음료는 사이다, 생수, 주스, 커피와 같은 다양한 음료 제품과 소주, 맥주, 청주, 위스키 등 주류 제품을 함께 제조, 판매하는 국내 대표 종합음료 회사입니다. 현재 롯데칠성음료는 칠성사이다로 대표되는 다양한 음료 브랜드와 더불어 목넘김이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제로 슈가 새로 소주, 4세대 맥주 크러시 등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주류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를 기반으로 오랜 시간 고객과 함께해온 롯데칠성음료는 '건강하고 존경받는 기업가치 실현'이라는 경영방침 아래에 주류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회사로서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합니다.

특히 한 시대가 공유하는 음주 문화를 올바르게 선도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넘어 공동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칠성음료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제품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주가 개인의 건강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목표로 더욱 노력하려 합니다.

책임있는 음주문화 조성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의 동참이 필요한 장기적인 과업입니다. 따라서 당사를 포함한 주류 업계의 다양한 관계자가 소비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책임있는 음주문화를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습니다.

책임있는 주류마케팅정책은 그러한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롯데칠성음료는 본 정책을 통해 동시대의 사회구성원과 함께 호흡하며 책임있는 음주 문화를 선도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24년 국내 기업 최초로 IARD(책임있는음주 국제연맹)에 가입한 것처럼 앞으로도 롯데칠성음료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책임있는 음주문화 조성에 힘쓸 것을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

1. 목적

본 정책은 책임있는 주류마케팅정책(이하 '본 정책')에서는 롯데칠성음료가 책임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주류 제품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하며 지켜야 할 사항등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정책은 책임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목표로 한다.
2. 책임있는 음주문화란 음주가 자신의 건강, 안전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지 및 고려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3. 대표적으로는 과음 지양, 타인 존중, 음주운전 금지 등을 의미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주세법 상 주류(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 제품의 개발, 광고 캠페인, 프로모션 등(이하 '마케팅')에 적용된다.

1. 적용 예외 사항

    1) 롯데칠성음료가 제작, 배포 등에 참여하지 않은 마케팅 결과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주세법 상 주류가 아니나 그에 준하게 다뤄야 할 제품(무알코올 제품 등)의 마케팅의 경우 별도 조항으로 규정한다.
    3) '정책 목적-1.'에 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적 메시지나 교육자료 제작 시, 일부 장면 연출을 위해 알코올 오남용, 음주운전, 미성년자 음주를 묘사하거나 표현할 수 있다.

3. 정책관리

1. 효력

    1) 본 정책은 2024년8월 20일, 정책서가 공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정책은 주류 관련 법규 개정 및 정책 변경 시 함께 개정될 수 있다.

2. 유지·관리

    1) 본 정책서는 롯데칠성음료의 주류 마케팅 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2) 마케팅 계획 시 본 정책에서 규정하지 않은 활동의 진행 여부는 1차적으로 '정책 목적'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3) 마케팅 활동의 적절성에 대한 자체적 판단이 어려울 경우 컴플라이언스의 자문을 받는다.
    4) 정책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발견 즉시 시정하기 위해 조치한다.

3. 기본원칙

롯데칠성음료의 모든 주류 마케팅은 관련 국내법과 보편적 윤리를 준수한다.

1. 법

주요 국내법 및 주류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1) 주세법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3) 국민건강증진법
4) 방송법
5) 개인정보보호법
6)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2. 윤리

1) 모든 마케팅은 인종, 세대, 성별, 국적,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이에 반하는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2) 특정 인물, 집단 등을 비방하거나 부정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3) 특정 인물, 집단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4) 비윤리적인 상황 및 관련한 문화 전반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4. 책임있는 마케팅 원칙

롯데칠성음료는 책임있는 음주를 장려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여 준수한다. 해당 원칙들에 대한 세부 사항 및 실행 방안은 세부지침에 구체화하여 명시한다.

1. 책임있는 마케팅 원칙

구 분		원 칙
마케팅 계획 공통	책임감 있는 음주 문화조성	• 책임감 있는 음주 장려 및 과음 조장 금지
	음주에 대한 바른 인식	•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소통
	주류 마케팅 불가 대상	• 미성년자, 임산부 대상 마케팅 금지
제품 표기	표 기	• 법적 표기 사항 준수 및 자체 마크 표기
주류 외 제품	무알콜 제품	• 오인 방지를 위한 표기 명확화
	주류 관련 상품	• 미성년자 대상 판매 금지
온라인 마케팅	개인정보보호	• 개인 신상 정보 보호
	SNS 운영	• 투명하게 소비자와 소통
책임있는 음주문화 캠페인	내 부	• 임직원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
	외 부	• 외부 소비자 캠페인 진행

5. 세부 실행 규정

1. 마케팅 계획 공통 준수사항

모든 마케팅 계획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따른다.

1) 책임감 있는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① 책임감 있는 음주를 장려하고 무책임한 음주를 조장하지 않는다.
② 음주량을 과시하거나 술을 잘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③ 종교, 신념, 개인적 이유 등으로 금주 또는 절주를 하는 사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④ 음주와 반사회적인 행동(폭력 등)을 연관하여 조장하지 않는다.
⑤ 음주와 담배나 흡연을 연관하여 조장하지 않는다.
⑥ 음주와 도박, 무기, 마약 등 불법적인 행동을 연관하여 조장하지 않는다.

2)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노력

① 운전 중 음주하는 장면(음주가 연상되는 장면 포함)을 묘사하지 않는다.
②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음주의 질병 예방 및 치료와 같은 기능을 주장하지 않는다.
③ 음주 및 주류 제품에 대해 건강 관련 기능을 주장하지 않는다.
④ 음주가 개인의 역량 향상 혹은 사회적인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⑤ 마케팅 시 제품의 장점을 높은 알코올 함량만으로 내세우지 않는다.

3) 주류 마케팅 불가 대상 준수

① 미성년자[2]와 임산부[3]는 음주가 불가능한 대상이며, 주류 제품 및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 및 캠페인은 미성년자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② 광고 제작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제작한다.

I. 모든 광고[4]에 미성년자와 임산부를 등장시키지 않는다.
II. 미성년자와 임산부를 직접적으로 대상으로 내세우는 광고 소재 및 콘텐츠를 제작하지 않는다.
III.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간접광고 진행 시 신분증 대조를 통한 연령확인 및 임산부 여부를 확인한다.
IV.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간접광고 진행 시 대행사 및 인플루언서에 본 정책을 배포한다.

③광고 채널 선정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선정한다.

---

[2] 성년이란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19세를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성년의 기준이 다른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적음주연령(Legal Drinking Age)을 의미하며 연령에 관계없이 음주가 가능한 국가의 경우 국내법에서 명시한 성년의 기준을 따른다. '미성년자'는 위에서 나열한 성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3]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의미한다.

[4] 광고란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이용 또는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에 필요한 정보를 매체를 통해 유료 또는 무료로 전달하는 홍보행위를 의미한다. 본 정책에서는 광고를 직접/간접 광고로 구분하며, 직접광고는 광고 소재 제작에 광고주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광고를, 간접광고는 광고 게시자(인플루언서 등)에게 원고료나 제품을 제공하여 소재 제작을 의뢰하는 광고로 정의한다.

I. 사용자의 연령확인/제한이 가능한 채널의 경우, 필히 노출 연령을 제한하여 미성년자에게 광고가 노출되지 않게한다.
II. 사용자의 연령확인/제한이 어려운 채널의 경우, 영유아(6세미만)에게 주로 소구하는 주제를 다루는 채널을 활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유아 애니메이션을 방영하는 채널은 광고 채널로 선정할 수 없다.
III. 참여자의 대다수가 영유아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에 후원하거나 브랜드를 노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청소년 대상의 운동회 및 문화 행사를 후원하거나 브랜드를 노출하지 않는다.
IV. 브랜드가 소유 및 관리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V. 연구활동이나 소비자 조사 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실행하거나 의뢰하지 않는다.

2. 제품 표기 준수사항

1) 표기

① 알코올 도수 표기, 각종 문구 삽입 등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주류 관련 표기사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② 모든 주류 제품의 라벨 혹은 포장재에 책임있는 음주마크팩을 개발하여 표시한다.

I. 책임있는 음주마크팩은 임산부 음용 금지, 미성년자 음용 금지, 음주 운전 금지 마크 중 최소 하나의 주제를 포함한다.
II. 책임있는 음주마크팩은 신제품 출시 시 제품 운영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③ 모든 주류 제품에 과학적 근거에 따른 주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주류 외 제품 마케팅 준수사항

1) 무알코올 제품[5] 마케팅

① 모든 무알코올 제품은 음료나 무알코올이 아닌 주류 제품과 오인되지 않도록 라벨, 포장재 등에 표시하여 명확히 구분한다.
② 모든 무알코올 제품의 마케팅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③ 알코올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무알코올 제품은 음주가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책임감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4. 온라인 마케팅 시 준수사항

온라인 공간의 중요도 상승에 따라 롯데칠성음료는 온라인 마케팅 시 개인정보보호와 SNS운영과 관련한 준수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다.

[5] 대한민국 주세법에 따라 무알코올 제품은 알코올이 1% 미만으로 포함된 제품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무알코올 제품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경우 해당 국가의 기준을 따르며, 무알코올 제품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 알코올 1%이하의 제품을 의미한다. 본 정책에서 무알코올 제품은 알코올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제품과 알코올이 미량(1%미만) 포함된 제품으로 구분한다.

1) 개인정보보호

① 소비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개인 신상 정보 수집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엄격히 관리한다.
②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는다.

2) SNS 운영 규정

① 주류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은 법적 경고문구를 포함한다.
② SNS 상의 콘텐츠는 주류 브랜드임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는다.
③ 당사 소유의 SNS 상에서 고객과 소통 시 롯데칠성음료의 SNS 담당자임을 선제적으로 밝힌다.
④ 당사 제품을 불법적인 경로로 판매 혹은 유통하거나, 그러한 의도를 포함한 내용을 게시하지 않는다.
⑤ 제품 제공 및 광고비를 지원하여 제작을 의뢰한 게시글의 경우 유료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한다.
⑥ SNS상의 표현은 일차적으로 '마케팅 캠페인-1.윤리 준수'의 조항을 따르며, 유행어, 은어의 경우 그 어원 및 용례를 확인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한다.
⑦ SNS 상의 확산성을 이용하여 경쟁사 제품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비방하지 않는다.
⑧ 당사의 SNS운영 기준과 이용 안내는 당사 홈페이지 내 롯데칠성음료 SNS운영 정책을 게재함으로써 공유한다.

5. 책임있는 음주문화 캠페인

롯데칠성음료는 책임있는 음주문화 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기 위하여 대내외 캠페인을 진행한다.

1) 내부

① 롯데칠성음료는 당사의 모든 임직원을 책임있는 음주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한 명의 소비자로 인식하고, 내부적인 음주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내 캠페인을 진행한다.
② 임직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은 본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준수에 집중한다.

2) 외부

① 책임있는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외 캠페인을 진행한다.
② 대외 캠페인은 음주운전근절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때 운전은 자동차와 함께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의 조작을 포함한다.
③ 캠페인 관련 활동을 매년 진행하여 그 결과를 다음해 지속가능보고서에 게재함으로써 공유한다.

6. 관련 회사 표준

책임있는 주류마케팅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회사표준으로 제정된 내부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1. ESG위원회규정
2. 브랜드위원회 및 개발실무위원회 운영규정

7. 제·개정

1. 최초 제정일 : 2024.08.20

[기업지배구조헌장]

전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

회사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회사 가치의 지속적 성장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회사는 지속 성장의 바탕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위하여 아래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제1장 주주

제1조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한다.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고 충분하게 제공한다.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자기거래, 경영간섭 등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이사회

제4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하며, 이사회 내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3인 이상, 전체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선임된 이사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한다.

④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2021. 12. 2. 컴플라이언스위원회 의결로 신설)

⑤ 회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⑥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이사회 운영

①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둔다.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 보관한다.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⑤ 이사는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③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8조 이사의 책임과 의무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이사의 책임

① 이사는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 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한다.

②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위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④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 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며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11조 평가 및 보상

① 이사회의 경영활동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② 이사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④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되,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 향상에 부합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보수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3장 감사기구

제12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로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검사,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의 사후보고 등을 수행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외부감사인

①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한다.

③ 외부감사인은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정기적 공시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④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외부감사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제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① 회사는 고객, 임직원,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 큰 가치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③ 회사는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④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⑤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두루 보호한다.

⑥ 회사는 법령 및 제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15조 공시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

②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적시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⑤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제16조 기업 경영권 시장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관리 정책]

1. 목적

본 정책은 롯데칠성음료가 준수해야 하는 조세 정책을 규정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에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롯데칠성음료에 적용된다. 롯데칠성음료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당사 임직원, 종속기업, 파트너사,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한다.

3. 조세정책 기본 원칙

1. 롯데칠성음료는 국내 법규 외에도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각 국의 법규에 따라 성실하게 세무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각 국의 과세당국과 투명한 관계 속에, 관련 법이 정하는 자료 제출 등 납세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2. 롯데칠성음료는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각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국가 간 세법의 차이나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기 위해 국가 간 소득을 이전하는 거래나 계약을 하지 않으며,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각 국에서 창출된 가치와 일관성 있게 과세소득이 배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경감하기 위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조세구조를 통해 국제 거래 상의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3. 롯데칠성음료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OECD 이전가격 Guide Line과 각국의 법규에 따른 정상가격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서는 이전가격 보고서를 외부 세무전문가와 검토 및 작성하여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롯데칠성음료 전 법인의 세무담당 임직원은 롯데칠성음료의 세무 정책에 따라 각국의 세무 법규를 준수하며, 과세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5. 롯데칠성음료는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불합리한 과세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조세 불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롯데칠성음료 글로벌 사업장에서는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신사업 투자, 기존사업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등)를 사전 검토하여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검토 시, 외부 세무전문가 및 과세당국의 자문을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4. 제·개정

1. 최초 제정일 : 2023.10.18

롯데칠성음료